

사업자등록의 모든 것

# 사업자등록 소홀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 부과

내 사업을 한 번 해볼까? 불황에도 창업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착수할 일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내 손으로 일구는 사업,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세금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에디터 강구술 글 이호(화인경영회계법인 회계사) 사진 최지영

대기업 임원을 지낸 김주점씨는 최근 20년 넘게 몸 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대학 시절 장사를 하는 부모님을 도와 일해본 적은 있지만, 스스로 사장이 돼 시작하는 창업은 처음이라 설레면서도 한편 두렵기도 하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은 세금에 관련된 것들. 특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서 대장에 수록하는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 전부터 꼭 챙겨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주점씨가 당장 챙겨야 할 실무 사항들을 살펴보자.

## 사업 개시 전 등록, 개업 준비 중 매입세액 환급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①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사업자용 또는 개인사업자용)를 작성한 후 필요한 첨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해 개업 준비 기간 중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등록번호는 총 10자리(XXX-XX-XXXXXX)로 구성되고 일정한 부여

기준이 있다. 처음 3자리는 관할세무서가 속한 청·서 코드이고 가운데 2자리는 개인·법인 구분 코드를 표시하며 뒤의 5자리는 일련번호 및 검증번호를 나타낸다.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사업자등록은 정정, 휴·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미 등록한 후 등록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등록정정사유는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명의 변경, 사업장이전 등이다. 한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는 지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매입세액 불공제다.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도 실무상 중요하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알고 보면 간단한 사업자등록·사업개시 전부터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